

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761
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9. 1. 30

1. 안 건 명 :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
2. 심사경과

의안번호	제출일자	회부일자	상 정 내 역 (상정일자)	심사결과
761	2009.1.30	2009.2.4	제213회 임시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 (2009.2.19)	원안 동의

3. 제안이유 및 요지 (도시계획국장 송득범)

가. 제안 이유

- 홍은동 주택재건축정비구역(제3구역) 인접지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시 (2007.9.12) 동 부지를 공원조성 후 기부채납 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공원)로 결정 후 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입주민들의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고자 함.

나. 주요 요지

-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안)

구분	시설명	시설의세분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신설	공 원	소공원	서대문구 홍은동 산1-549일대	-	증)747	747		

4. 도시관리계획사항

- 자연녹지지역, 개발제한구역

5.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안)에 대한 의견청취

가. 주민의견청취 (2007.11.24~12.8) : 의견 없음.

나. 구의회 의견청취 (2008.9.29) : 원안 동의

다.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(2008.10.16) : 원안 가결

6. 관련부서 의견

제출부서	제출의견	조치계획(결과)	비고
서울시 자연생태과	행위허가 발생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	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후 사업인가 전 조치예정	반영
서대문구 치수방재과	자연지형을 유지하면서 개발	자연지형에 순응하는 개발예정	반영

7.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

- 무허가 노후불량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공원 조성시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에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8. 기 타

- 토지현황 : 3필지 747㎡
 - 국 유 지 : 1필지 35㎡ (4.7%)
 - 시 유 지 : 1필지 153㎡ (20.5%)
 - 사 유 지 : 1필지 559㎡ (74.8%)
- 건물현황 : 2동(무허가 건축물)

- 재원조달방안 : 1,740백만원(홍은 3주택재건축조합 부담)

9.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김종식)

- 본 안건은 서대문구 홍은동 산1-549 일대 747㎡를 공원으로 결정하려는 것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입안하여 결정 요청한 사안임.
 - 대상지는 홍은동 주택재건축정비구역(제3구역) 인접지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정비계획 심의시(2007.9.12) 동 부지를 공원조성 후 기부채납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공원)로 결정 후 공원을 조성하여 입주민들의 휴식 및 녹지공간으로 활용토록 하려는 사안임.
 - 참고로 공원조성사업비는 총 17억 4천만원으로 전액 '홍은제3주택재건축조합'에서 부담할 계획임.
- 대상지 인근 '홍은 제3주택재건축조합'의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조합의 재정부담 등 사업 추진의지에 따라 조성되는 시설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결과와 같이 공원 조성시 향후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 - 다만 본 소공원이 홍은제3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입지할 공동주택만의 공원이 되지 않도록 주변 지역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병행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10. 질의 및 답변 요지

- 생략

11. 토론 요지

- 생략

12. 심사 결과 : 원안 동의 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.....